


의정활동보고서



제277회 임시회(2015. 4. 23 ~ 5. 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독도를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주낙영 행정부지사님,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 곳 독도에서 제277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는 300만 도민은 물론 7천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반드시 우리 손으로 수호한다는 굳은 결의와 다짐을 재천명하기 위해 우리의 땅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상호신뢰와 존중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해 왔으

나, 일본은 겉으로는 동반자적 한·일 관계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독도영유권을 명기한 중학 교과서 왜곡검정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청서 발표, 방위백서 독도 영
유권 명기, 다케시마의 날 연례행사 등 시간이 갈수록 독
도에 대한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본의 억지주장과 경거망동을 사전에 차
단하여 어리석은 독도강탈 야망을 분쇄하는데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독도의 달 조례』, 『독도거주 민간인지원 조례』, 『독도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
로도 입도지원센터, 방과제 건립 등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울릉도·독도를 해양과학 연구의
전진기지, 해양생태 연구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독도임시회 개최를 비롯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

등으로 매우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안 심사시 도민의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살펴보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울릉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차 례

I. 개 황	193
II. 의사일정	195
III. 의안처리	202
IV. 민원처리	203
V. 본회의 보고사항	205
VI. 5분 자유발언	207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7
□ 박용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211

부 록

☐ 조례안(11건)	217
☐ 예산안(1건)	306
☐ 동의안(1건)	311
☐ 결의안(2건)	314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77회 임시회는 2015년 4월 23일 독도에 서 본회의를 개최하여 5월 6일까지 14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12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3회의 예산결산위원회 및 1개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4월 23일(목)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여 먼저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남진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하여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 도발 규탄 결의안”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6일(수)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조례안 중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과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277회 임시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반드시 우리 손으로 수호한다는 굳은 결의와 다짐을 재천명하기 위해 우리의 땅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의미 있는 회기였으며,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회계 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으로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5년 4월 23일(목) 16:30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5년 4월 23일 ~ 5월 6일(14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20회)
 ○ 위원회

(단위: 회수)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6	1	2	2	2	2	2	1	3.	1
누 계	134	9	16	19	16	14	15	12	21	12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3(목) 16:30 (제1차)	☐ 5분 자유발언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안전처리 ○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 결의안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4. 27(월)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박용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안전처리 ○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6(수) 11:00 (제3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6(수) 11:00 (제3차)	○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에 관한 조례안 ○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7(월) 14:00	☐ 안전심사 ○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8(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기획조정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경북개혁추진단	
4. 29(수) 11:00 (제2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7(월) 14:30 (제1차)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경북도립대학교, 인재개발정책관, 안전행정국 ☐ 안전심사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8(화) 10:30 (제2차)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안 ○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8(화) 11:00 (제1차)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연구원, 문화관광체육국 ☐ 안전심사 ○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4. 29(수) 11:00 (제2차)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환경산림자원국 및 사업소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8(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의정포럼 농수산분과 간담회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농축산유통국	
4. 29(수) 11:00 (제2차)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8(화) 11:00 (제1차)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9(수) 11:00 (제2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지역균형건설국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7(월) 11:00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3(목)	☐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 도발 규탄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30(목) (제19차)	☐ 201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북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교육원, ☐ 경북도립대학교 ☐ 인재개발정책관, 안전행정국, 복지건강국	
5. 1(금) (제20차)	☐ 201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 의회사무처 ☐ 지역균형건설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4(월) (제21차)	☐ 계수조정소위원회 ☐ 201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Ⅲ. 의안처리

구 분		접수 (부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고
			계	가 결		부 결	폐안			
				원 안	수 정					
계		20 (156)	20 (155)	17 (129)	3 (25)	(1)			1 (1)	
조 례 안	소 계	11 (77)	11 (76)	9 (60)	2 (15)	(1)			1 (1)	
	의회 제안	8 (39)	8 (38)	6 (32)	2 (6)				1 (1)	
	도지사 제출	3 (26)	3 (26)	3 (18)	(8)					
	교육감 제출	(12)	(12)	(10)	(1)	(1)				
규 칙 안		(1)	(1)	(1)						
예산·결산		1 (9)	1 (9)	(4)	1 (5)					
동의·승인		1 (13)	1 (13)	1 (8)	(5)					
건의안		(1)	(1)	(1)						
결 의 안		2 (13)	2 (13)	2 (13)						
기 타 안		5 (42)	5 (42)	5 (42)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1)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 4. 15, 이진락 의원 외 3인, 행정안전복지위원회
원안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회					
누계	1		1	1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34)	1 (19)	(2)	(2)	(2)	(1)	(4)	(3)		(1)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2)						(2)			
행 정 보건복지	(6)	(2)	(2)		(1)		(1)			
문 화 환 경	(6)	(5)						(1)		
농수산	(3)	(2)					(1)			
건 설 소 방	1 (11)	1 (6)		(2)	(1)			(2)		
교 육	(6)	(4)				(1)				(1)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송	
계	4 (33)	4 (33)				1
의회운영						
기획경제	(2)	(2)				
행 정 보건복지	2 (6)	2 (6)				
문화환경	(6)	(6)				
농 수 산	(3)	(3)				
건설소방	2 (10)	2 (10)				1
교 육	(6)	(6)				
특별위원회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3건[조례안 9, 동의안 1, 결의안 2, 예산안 1]

제출·발의자 (접수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박성만 의원 외 11인 (‘15. 4. 10)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기획경제 (‘15. 4 14)
경상북도지사 (‘15. 4. 10)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
"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15. 4 14)
이정호 의원 외 2인 (‘15. 4. 10)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영길 의원 외 19인 (‘15. 4. 10)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작업재활 지원 조례안	"
이진락 의원 외 3인 (‘15. 4. 15)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4. 16)
최병준 의원 외 3인 (‘15. 4. 10)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문화환경 (‘15. 4 14)
한창화 의원 외 10인 (‘15. 4. 10)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지원 조례안	농수산 (‘15. 4 14)
장경식 의원 (‘15. 4. 10)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교육 (‘15. 4 14)
독도수호특별위원장 (‘15. 4. 23)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 결의안	본회의 (‘15. 4. 23)
경상북도지사 (‘15. 4. 10)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각 상임위, (‘15. 4 14)

2. 조례공포 사항 : 8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15. 3. 2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5. 4. 6 (제3611호)
"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612호)
"	"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 (제3613호)
"	"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614호)
"	"	경상북도 공무원 주건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615호)
"	"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616호)
'15. 3. 27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	'15. 4. 13 (제3617호)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5. 4. 13 (제3618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 자	장 소	참석의원	활 동 내 용
기획경제 위 원 회	'15. 4. 6	대구시 의 회	위원장 외 1명	○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 - 공동 출자출연기관 합동 업무 보고 관련 협의 등
문화환경 위 원 회	'15. 4. 16	경 주, 대 구	위원장 외 8명	○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현장 방문 - 심포지엄 참석 『새마을운동과 물관리』 - 전시회 참관 및 진행 관계자 격려
농 수 산 위 원 회	'15. 4. 1 ~ 4. 3	제주도	위원장 외 9명	○ 타시도 농수산 시책추진 비교 견학 - 제주농산물원종장 씨감자 생산 현장 비교견학 - 제주해양수산물연구원 해양연구시설 견학

VI. 5분 자유발언

□ 2015년 4월 23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울릉도, 독도 현안문제에 대하여 >>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울릉군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이자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인 이곳 독도 현장에서 제27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독도가 틀림없는 우리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의원마저 이렇게 발 디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른 국민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비록 여건이 육지만 못하더라도 이 외로운 섬 독도를 가슴에 새겨 두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울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독도 땅 밟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일본은 '외교청서'와 아이들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세계를 향하여 대놓고 왜곡 선동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나마

눈치라도 보는 시늉을 했지만 이제는 아예 공개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조용한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늘 그렇듯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갖가지 약속을 쏟아놓고는 하나같이 흐지부지되는 현실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과연 정부와 경상북도가 독도를 수호할 의지는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되는 공약무산과 ‘독도를 이용한 이벤트성 쇼’에 냉소를 보내는 것이 작금의 민심입니다.

정부는 개발유보 사유의 하나로 독도의 문화재적 가치를 거론합니다마는 그것도 독도가 우리 영토일 때의 이야기이지 일본에 빼앗긴 다음에야 문화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파괴가 아닌 실효적 지배를 위한 개발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독도영유권 강화 사업은 결국 모섬인 울릉도를 통하여 추진되고 완성됩니다.

최근 들어 울릉도에는 많은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공항, 항구 등 4~5년 후면 울릉도의 모습이 일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여파로 인한 관광객은 반토막 나고, 중국어선 출몰로 어업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72회와 제27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울릉도, 독도의 현안 문제 몇 가지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 중 겨울철 여객선 결항으로 인한 주민 이동권 애로에 대해서는

조례제정과 더불어 유류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주셔서 지난 겨울 육지 왕래와 물류소통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흔쾌하게 성원해 주신 경상북도지사와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귀중한 독도 임시회인 만큼 이 자리를 빌려 지역현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할까 합니다.

첫째, 자랑스러운 3백만 경북도민에게 울릉도, 독도의 방문 기회를 확대해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릉도, 독도 방문의 최대 걸림돌인 고액의 여객운임을 대폭 할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금년 3월부터 시와 군, 선사가 각각 부담하여 여객선 운임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독도가 경상북도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을 감안하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독도수호에 동참하자는 취지이므로 이 여객운임 할인 제도야말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김관용 지사님께서서는 민선 6기 취임식을 이곳 독도에서 개최하는 등 평소 독도수호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3백만 도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독도사랑 여객운임 할인 제도에 지사님의 각별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울릉도 관문인 도동지역의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동시가지 핵심요지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울릉학생체육관 부지를 활용하는 외

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이 부지에 대형 공영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상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께서는 동 부지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특히 독도수호의 전초기지인 울릉도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상이관, 무상이용 등 가능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비록 편의시설은 열악하나 자연환경만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울릉도, 독도를 마음껏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독도임시회가 아베와 일본정부에 큰 뇌성으로 다가가 진정한 반성과 속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용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 88올림픽 고속도로 명칭과 관련하여 >>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내에 있는 고속도로 중에서 유일하게 도로의 지정학적 위치, 도로 통과 지역의 지명 및 랜드마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이름이 붙어 있는 88올림픽고속도로에 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88고속도로는 1980년 9월에 건설계획을 세우고 1981년 10월에 착공하여 2년 8개월만인 1984년 6월에 초고속으로 준공한 고속도로로서 노선 기획 당시 정부 내부에서는 동서 지역을 잇는다 해서 동서고속도로, 소백산맥을 타고 넘는 노선이라는 의미에서 소백고속도로, 지리산을 통과한다는 의미에서 지리산고속도로 등의 명칭들이 실제로 물망에 올랐으나,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1988년도 서울 올림픽 유치에 성공시킨 것을 치적하고 기념하기 위해 “88올림픽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제안하여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전라남도 담양군~전북 순창군~남원시~장수군~경남 함양군~거창군~합천군~경북 고령군~대구 달성군을 연결하는 181.9km의 상당히 긴 횡축 노선입니다. 예로부터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은 소

백산맥이 가로놓여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언어·생활풍습·가치관이 서로 다른 이질적 문화권을 형성하였지만 이 도로를 통하여 영·호남 지역이 직접 연결됨으로써 상호 교류가 촉진되고, 두 지역의 산업을 연계하여 지방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졸속 설계와 시공으로 인해 대부분의 구간이 제한속도가 80km/h인 관계로 어지간한 왕복 4차로 국도보다 못한 상태로 30여 년간 운영 중인 국내 유일한 편도 1차로 고속도로입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급조하여 건설이 결정되었고,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터널을 뚫지 않고 산을 그대로 타고 오르는 노선을 택하다 보니 시거가 2km를 넘는 구간이 거의 없으며 도로가 가파르고 선형이 불량한 곳이 많아 7도 안팎의 급경사 구간이 매우 많으며, 전국 최초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이다 보니 겨울철 결빙 구간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탓에 지난 10여 년간 고속도로 사망률 1위, 노선별 치사율도 전국 최고로서 2001년에는 1/4분기에만 치사율이 44.8%를 찍기도 했으며 그야말로 사고만 났다 하면 3건 중에 1건 이상은 반드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국내 최악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심지어 네티즌들은 이러한 것을 죽을 死자에 빗대어 “死死(44)내림픽저속도로”, “죽음의 도로”라고 비꼬기도 하였습니다.

오는 6월이면 개통 31주년을 맞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이른바 “무늬만 고속도로”인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 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총 사업비 3,800여 억 원을 들여 금년

연말까지 전 구간에 대해 4차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어 88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씻어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당시 정권이 호남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영·호남 화합의 이름으로 탄생한 “88올림픽 고속도로”의 명칭을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꾸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전남도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의원들께 명칭 변경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애초 과학적 교통 수요예측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결단으로 급조하여 탄생한 고속도로였고, 대통령의 올림픽 유치 치적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지역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명칭으로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명칭 하나를 결정하는 데에도 지역을 고루 배려하고 존재물에 대한 존엄성과 정체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 명은 두 글자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예를 들면 경부, 중부, 남해, 동해, 영동, 구마 등 이 같은 문자 형평성·관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남과 호남을 관통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재탄생 한다면 88올림픽고속도로라고 하면 떠오르는 군부·독재의 잔영과 “죽음의 도로”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 말로 확장공사가 마무리 되어 재탄생하는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면서, 김관용 지사님께서도 동서화합차원에서 명칭 변경에 대하여 호남지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적극적인 의견을 정부 측에 촉구하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 조례안 : 11건
- ☐ 예산안 : 1건
- ☐ 동의안 : 1건
- ☐ 결의안 : 1건

二 조 례 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157명”을 “5,1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53명”을 “1,95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2명”을 “103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합계란 “5,157”을 “5,160”으로, 일반직 소계란
“1,817”을 “1,815”로, 5급 이하 합계란 “1,714”를 “1,712”로
하며, 연구직 소계란 “196”을 “201”로, 연구사 합계란 “157”
을 “162”로 한다.

별표 4 중 합계란 “5”를 “4”로 하고, 내역란 “일반직 : 3급 2, 4
급 1, 5급 이하 2”를 “일반직 : 3급 2, 5급이하 2”로 하며,
경북개혁추진단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157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953명
2. ~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2명

제2조(정원의 총수).....
.....5,160명.....
.....
1. : 1,955명
2. ~ 3. (현행과 같음)
4. : 103명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경제자유 구역청
합 계		<u>5,157</u>					
:							
일반직	소 계	<u>1,817</u>					-
	2~3	1		1			
	3급	11	10		1		
	3~4급	2	2				
	4급	78	56	7	5	9	1
	5급 이하	<u>1,714</u>					-
	전문경력관	11					-
:							
연구직	소 계	<u>196</u>					-
	연구관	39	1		37	1	
	연구사	<u>157</u>					-
: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경제자유 구역청
합 계		<u>5,160</u>					
:							
일반직	소 계	<u>1,815</u>					-
	2~3	1		1			
	3급	11	10		1		
	3~4급	2	2				
	4급	78	56	7	5	9	1
	5급 이하	<u>1,712</u>					-
	전문경력관	11					-
:							
연구직	소 계	<u>201</u>					-
	연구관	39	1		37	1	
	연구사	<u>162</u>					-
:							

현행					개정안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정원(명)		존속기한	비고	기관별	정원(명)		존속기한	비고
	계	내역				계	내역		
합계	5	일반직 : 3급 2, 4급 1, 5급 이하 2			합계	4	일반직 : 3급 2, 5급 이하 2		
경북개혁추진단	1	일반직 : 4급 1	2015. 6.30		〈삭제〉				
문화관광체육국	2	일반직 : 5급 이하 2	2015. 12.31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문화관광체육국	2	일반직 : 5급 이하 2	2015. 12.31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동해안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5. 8.31		동해안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5. 8.31	
도청신도시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6. 12.31		도청신도시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6. 12.31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가 출자하여 경상북도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구축을 위한 사업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4 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5 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 6 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 7 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타 법령의 적용 및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 9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 ----- -----.
1. 징수관, <u>경리관</u> ,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1. -----, <u>재무관</u> , ----- ----- -----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 ----- ----- -----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 문제 해결 및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6.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 4 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 5 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

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기업 운영 지원
 6.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9.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제10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 6 조(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 7 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른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센터,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근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8 조(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경상북도 인증 자활

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받지 않은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준용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조(우선구매 등)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2.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3. 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그 밖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축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10조(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제공과 필요한 경영지원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자활·자립에 노력한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참여자
2. 자활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3. 자활사업에 기여한 종사자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자활자립상조례」는 폐지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
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4 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국가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 발굴
 6.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6 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도의 산하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비율이라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 공기업 등은 항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와 관련하여 매년 도, 시·군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 8 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위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및 직업지도 등
2.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 알선 및 권고 등
3.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자 및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
7.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8.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취업 후 지도)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주에 대한 지도)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배치, 작업 보조구·작업 설비 등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장비 등
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3.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사업 등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5년 4월 28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조례안의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¹⁾와 조문간의 중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북지사의 업무와의 유사중복 등 조문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함.

1) 제5조(지원사항) ① 도지사와 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시 우대
2.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시 우대
3. 그 밖에 도 및 공기업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시행시 우대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4항)
- “산하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하고(안 제6조제1항),
- “홍보·교육사업”을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으로 하고(안 제8조제1항제5호),
 -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와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로 수정하고(안 제8조제1항제6호, 제7호),
 -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환경 적응 및 고용관리에 대한 지도와 그 밖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우대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제1항제9호, 제10호),
- 그 밖에 조문 정비(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

3. 수정안 : 불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불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2항의 추진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안 제6조제1항의 “산하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하고,
- 안 제8조제1항제5호의 “홍보·교육사업”을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으로 하고,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와 제10호를 신설한다.
 - 6.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
 - 7.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 9.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환경 적응 및 고용관리에 대한 지도
 - 10. 그 밖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우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 안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6호를 제3호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의 “타”를 “다른”로 하고 제3항으로 한다.
-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를 각각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 5 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 수립)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u>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제 5 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 수립)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④ <u>제2항의 추진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u>
제 6 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u>도의 산하기관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u> ② (생략)	제 6 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_____ 지방공기업 등 _____ ② (생략)
제 8 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생략) 1.~4. (생략)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u>홍보·교육 사업</u>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 7. <u>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u> 8. (생략) (신설) (신설)	제 8 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제정안과 같음) 1.~4. (제정안과 같음)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u>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u> 6.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 7. <u>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u> 8. (제정안과 같음) 9. <u>취업 후 장애인의 작업환경 적응 및 고용관리에 대한 지도</u> 10. <u>그 밖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우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제 정 안	수 정 안
<u>제 9 조(취업 후 지도) 도지사는 장애인</u> <u>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작</u> <u>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u> <u>수 있다.</u>	(삭제)
<u>제10조(사업주에 대한 지도) 도지사는</u> <u>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u> <u>주에게 장애인 채용·배치, 작업 보조</u> <u>구·작업 설비 등 작업 환경, 그 밖에</u> <u>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u> <u>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u>	(삭제)
<u>제1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u> ① (생략) 1.~2. (생략) 3. <u>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u> <u>한 구매</u> 4. 「 <u>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u> 」 <u>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기</u> <u>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u> <u>자에 대한 지원</u> 5. <u>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연</u> <u>구·홍보사업 등의 지원</u> 6. (생략) ② <u>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u> <u>진함에 있어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u> <u>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우</u> <u>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우대할</u> <u>수 있다.</u> ③ (생략) ④ <u>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u> <u>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u> <u>의 지원을 받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u> <u>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u>	<u>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u> ① (생략) 1.~2. (생략)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생략) ② (삭제) ② (제정안과 같음) ③ _____ _____ <u>다른</u> _____ _____. <u>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u> <u>~② (생략)</u> <u>제11조(포상) (생략)</u> <u>제12조(시행규칙) (생략)</u>
<u>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u> <u>~② (생략)</u> <u>제13조(포상) (생략)</u> <u>제14조(시행규칙) (생략)</u>	<u>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u> <u>~② (생략)</u> <u>제11조(포상) (생략)</u> <u>제12조(시행규칙) (생략)</u>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상북도
(이하 “도”라 한다)지역에 소재한 관광 전문업체에 의해 개
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
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 “우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이 있고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의 대표 상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3.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란 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판매하는 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다른 동일 업종과 비교해서 우수한 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 업체를 말한다.

제 3 조(시책과 사업)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선정 및 육성방안
3.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개최 및 활성화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4 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 투자 본부장, 농축산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3. 관광기념품 관련 분야 대학교수
 4. 그 밖에 관광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관광진흥과장이 간사가 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7 조(관광기념품 경진대회 개최)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의 행사
- ② 제1항의 경진대회에서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전시·관람하게 한다.
- ③ 제1항의 경진대회의 개최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④ 도지사는 경진대회 개최 및 전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입상자 지원) 도지사는 도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2.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3.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4.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및 업체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경북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제작·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 우수 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선정·지정 신청 관련 절차)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선정·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업체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선정·지정을 한 경우 이를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선정·지정을 받은 사람이나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선정·지정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선정·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

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 또는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선정·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폐업, 관외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 또는 시정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경북 우수 관광기념품으로서의 선정 가치를 잃었을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선정·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기관) ① 도지사는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정·지정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기관 지정·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제14조(우수 관광기념품 및 업체 육성·지원)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 관광기념품과 관광기념품 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및 용자 알선
2.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판로개척 및 홍보 촉진 등)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홍보 촉진 활동
2.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 실태 조사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보조금 신청 등)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한
보조금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소외 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 4 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컨설팅사업
 5.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 5 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6 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5년 4월 28일

제 안 자 : 문화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4조 제2항의 업무 위탁 대상 법인이나 단체를 공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법인·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제안함.

2. 주요내용

-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안 제2조).
- 업무 위탁 대상 법인이나 단체를 공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체육회의 경상북도 지부나 경상북도 생활체육회로 한정함(제4조 제2항).

3. 수 정 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중 “복지적 봉사활동”을 “활동”으로 하고
- 안 제4조 제2항 중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체육회의 경상북도 지부나 경상북도 생활체육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 2 조(정의)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u>복지적 봉사활동</u> 을 말한다.	제 2 조(정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활동</u> _____ _____	“복지적 봉사활동”의 의미 불명확
제 4 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u>관련 법인이나 단체</u>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 4 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 ① (원안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u>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체육회의 경상북도 지부나 경상북도 생활체육회</u> _____ _____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공공성이 담보된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소외 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 4 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컨설팅사업
5.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체육회의 경상북도 지부나 경상북도 생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 5 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스포츠 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6 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 4 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6 조(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한다.

제 7 조(생산 및 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어자재, 시설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어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어업인이 친환경 어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 9 조(소비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 기관 및 단체급식업소의 장 등에게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급식)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친환경어업 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와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
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산단절차간소화법 및 산업입지

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 등”이라 한다)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협의를 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에 대하여는 도내 입지한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제 2 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 3 조(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개발업무 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산지, 농지, 문화재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구성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 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6 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의 지원
3.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 조치 지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 영향평가 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자문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투자의향서 접수에 따라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검토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자문수당)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경상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 9 조(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실국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1명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5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8. 「산지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경상북도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각 2명

제11조(임기) ① 제10조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에서의 임기내로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된 때에는 해당 위원장은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제7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이 투자의향서 검토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분야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위원회 심의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 포함)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① 위원이 회의에 부쳐진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단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개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19조(비밀유지) 위원은 회의 및 자문 등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산업단지 개발, 분양 및 유지관리

제22조(분양가격 결정)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분양 적정이윤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②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건축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건축원가의 100분의 10의 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추정이익과 건축원가의 산정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의하며 건축원가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재생사업지구 내 도로율 및 녹지율 등) 산업입지법 제39조의15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하는 녹지율, 도로율은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해 재생사업지구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4조(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산업단지 등에는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에 한한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에 계획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산업단지내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한다.

제25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입주를 원하는 산업단지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가능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게 할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중 도내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기업(대규모 투자기업
범위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를 적용한다)

2. 신규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 해당 산업단지 관할 시장·군수의 추천이
있는 기업

3.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② 제1항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수요가 공급가능 필지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제26조(유지관리 등 지원) 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공공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관할 시·군에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
42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한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최초로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 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의용소방대의 표지)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 4 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 5 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조직)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대의 정원) ①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읍지역 : 40명 이내
2. 면지역 : 30명 이내
3.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 20명 이내

② 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리·통)단위로 균형 배치토록 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 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고문의 위촉)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하여 현신·봉사한 전직 의용소방대장 등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

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의용소방대원의 신규임명에 관한 사항
2. 제21조의 성과중심의 보상 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26조의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

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장 등의 추천) ①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관서장, 대장,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 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제15조(전담의용소방대)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 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5 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은 매월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지급한다.

③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견학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2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 6 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제23조(설립)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 설립된 연합회 : 경상북도(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
2. 시·군에 설립된 연합회 : ○○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지역에 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리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4조(조직 및 구성) ① 도연합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서기 1명을 두며, 소방서연합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연합회 : 소방서(군지역 포함) 연합회장
2. 소방서연합회 : 대장

③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5조(회장 등의 임명) ① 도연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소방서연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② 부회장, 사무국장 및 서기는 회장이 회원중에서 지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연합회의 회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15조, 제16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회장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연합회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도연합회 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제27조(운영) ① 도연합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소방서연합회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방서연합회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

⑤ 사무국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8조(회의 등)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소방서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장 보칙

제30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의용소방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제7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제7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 3 조(연합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종전에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

피추천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직장전화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의용소방대	추천대	
	추천사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신규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〇〇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
(부대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 ○○의용소방대 ○○
으로 임명함.

년 월 일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소 속	직 위	성 명
이 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재직기간
	주소		
사직사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〇〇소방서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〇〇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 2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 이메일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출석 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소방서 〇〇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소방서 〇〇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의견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재직기간
	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〇〇소방서장 귀중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대기근무일지

○○전담의용소방대

일 자	근무 시간	근 무 자			근 무 내 용	결 재		
		직위	성명	서명		부장	부대장	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석인원		교 관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훈련 인원

[illegible]

확인자 : ○○119안전센터장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소집수당 신청서

(앞쪽)

[illegible]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15. 16. 17.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OO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활동 시간

(뒷면)

[illegible]

[별지 제13호 서식]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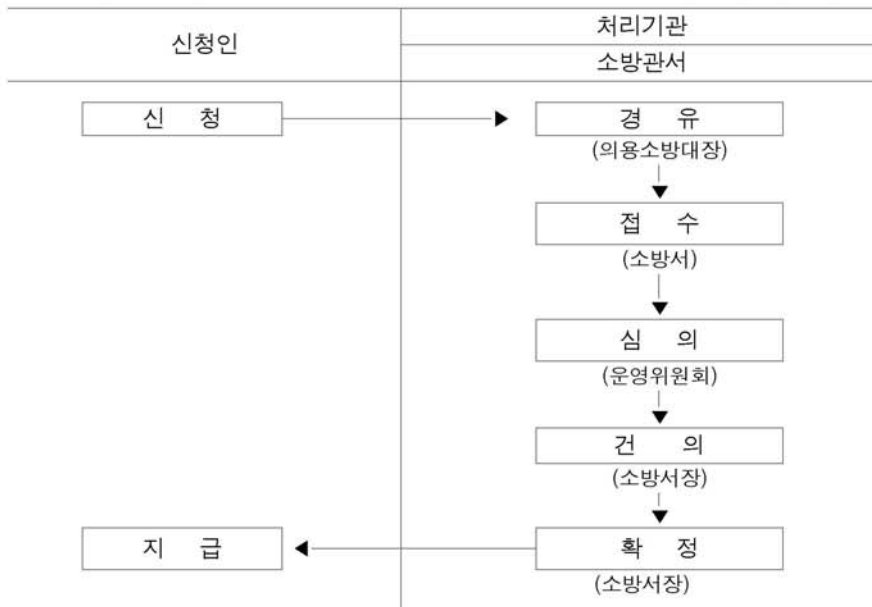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별지 제15호 서식]

임 명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남성(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임 명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

○○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 남성(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안전한 식재료”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말한다.

제 3 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제 5 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실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해당학교에 알리고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6 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9 조(업무협조)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및 시·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二 예 산 안

-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5월 6일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991,981,000	100.00%	7,341,210,000	100.00%	650,771,000	8.86%
일반회계	6,750,087,000	84.46%	6,281,000,000	85.56%	469,087,000	7.47%
특별회계	1,241,894,000	15.54%	1,060,210,000	14.44%	181,684,000	17.14%
공기업특별회계	642,965,000	8.05%	518,556,000	7.06%	124,409,000	23.99%
지역개발기금운영	642,965,000	8.05%	518,556,000	7.06%	124,409,000	23.99%
기타특별회계	598,929,000	7.49%	541,654,000	7.38%	57,275,000	10.57%
의료급여기금운영	467,425,564	5.85%	456,797,000	6.22%	10,628,564	2.33%
치수사업	23,450,198	0.29%	20,341,000	0.28%	3,109,198	15.29%
경북도립대학교운영	12,476,667	0.16%	9,938,000	0.14%	2,538,667	25.55%
광역교통시설	3,936,571	0.05%	2,898,000	0.04%	1,038,571	35.84%
발전소지역자원 시설세	82,440,000	1.03%	42,480,000	0.58%	39,960,000	94.07%
학교용지부담금	9,200,000	0.12%	9,200,000	0.13%	0	0.00%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 · 관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7,991,981,000	100.00%	7,341,210,000	100.00%	650,771,000	8.86%
100 지방세수입	1,500,000,000	18.77%	1,380,000,000	18.80%	120,000,000	8.70%
110 지방세	1,500,000,000	18.77%	1,380,000,000	18.80%	120,000,000	8.70%
200 세외수입	178,906,126	2.24%	183,647,394	2.50%	△4,741,268	△2.58%
210 경상적세외수입	66,527,918	0.83%	67,550,688	0.92%	△1,022,770	△1.51%
220 임시적세외수입	112,378,208	1.41%	116,096,706	1.58%	△3,718,498	△3.20%
300 지방교부세	916,307,000	11.47%	972,900,000	13.25%	△56,593,000	△5.82%
310 지방교부세	916,307,000	11.47%	972,900,000	13.25%	△56,593,000	△5.82%
500 보조금	4,065,134,502	50.87%	3,906,290,650	53.21%	158,843,852	4.07%
510 국고보조금등	4,065,134,502	50.87%	3,906,290,650	53.21%	158,843,852	4.07%
600 지방채	205,000,000	2.57%	205,000,000	2.79%	0	0.00%
610 국내차입금	205,000,000	2.57%	205,000,000	2.79%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26,633,372	14.10%	693,371,956	9.44%	433,261,416	62.49%
710 보전수입등	784,448,070	9.82%	400,271,000	5.45%	384,177,070	95.98%
720 내부거래	342,185,302	4.28%	293,100,956	3.99%	49,084,346	16.75%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991,981,000	100.00%	7,341,210,000	100.00%	650,771,000	8.86%
010 일반공공행정	1,576,742,436	19.73%	1,305,625,833	17.78%	271,116,603	20.77%
020 공공질서및안전	200,730,835	2.51%	189,649,908	2.58%	11,080,927	5.84%
050 교육	66,825,747	0.84%	54,134,747	0.74%	12,691,000	23.44%
060 문화및관광	556,676,479	6.97%	471,020,267	6.42%	85,656,212	18.19%
070 환경보호	514,813,301	6.44%	490,481,636	6.68%	24,331,665	4.96%
080 사회복지	2,371,409,272	29.67%	2,299,672,590	31.33%	71,736,682	3.12%
090 보건	106,791,425	1.34%	104,330,571	1.42%	2,460,854	2.36%
100 농림해양수산	1,026,744,847	12.85%	975,835,828	13.29%	50,909,019	5.22%
110 산업·중소기업	200,275,846	2.51%	152,730,046	2.08%	47,545,800	31.13%
120 수송및교통	362,550,144	4.54%	321,674,151	4.38%	40,875,993	12.71%
140 국토및지역개발	485,944,808	6.08%	454,553,138	6.19%	31,391,670	6.91%
150 과학기술	34,345,840	0.43%	28,914,840	0.39%	5,431,000	18.78%
160 예비비	62,810,000	0.79%	76,663,348	1.04%	△13,853,348	△18.07%
900 기타	425,320,020	5.32%	415,923,097	5.67%	9,396,923	2.26%

□ 수정가결 : 수정조서 불입

〈붙임〉

201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

【삭감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요구예산액	수정예산액	감 액	비 고
	합 계		6,638,500	3,510,000	△3,128,500	
22	대 변 인 실	SNS콘텐츠 개발 및 운영	30,000	0	△30,000	
45	기획조정실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	3,200,000	2,000,000	△1,200,000	
99	일 자 리 민 생 본 부	일자리 창출 활성화 전략기획 홍보	230,000	200,000	△30,000	
150	안전행정국	바르게 살기 운동 경상북도 협의회 운영	20,000	10,000	△10,000	
153	안전행정국	청사환경조성 예술작품 구입 (신청사)	900,000	600,000	△300,000	
171	복지건강국	효문화 진흥원 건립 지원	340,500	0	△340,500	
175	복지건강국	시군 장애인 인권종합 민원상담센터 운영	416,000	0	△416,000	
176	복지건강국	농어촌 장애인 상담센터 운영	30,000	0	△30,000	
176	복지건강국	에코그린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10,000	0	△10,000	
176	복지건강국	도 지체장애인 상담사업 지원	22,000	0	△22,000	
181	복지건강국	의료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150,000	0	△150,000	
181	복지건강국	원격영상진료시스템 운영	40,000	0	△40,000	
185	복지건강국	치매극복 홍보단 운영	100,000	0	△100,000	
188	복지건강국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 시상	10,000	0	△10,000	
188	복지건강국	의료관광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10,000	0	△10,000	
229	문 화 관 광 체 육 국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 오페라(가락국기) 지원	200,000	0	△200,000	
229	문 화 관 광 체 육 국	광복 70주년 기념 오페라 '심산김창숙' 공연 지원	100,000	0	△100,000	
235	문 화 관 광 체 육 국	실�크로드 프로젝트 홍보물 제작 등	30,000	0	△30,000	
235	문 화 관 광 체 육 국	융복합 문화축제	450,000	400,000	△50,000	
303	농축산유통국	도농상생 로컬푸드장터 및 농식품홍보관 운영	350,000	300,000	△50,000	

【증액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요구예산액	수정예산액	감 액	비 고
	합 계		0	3,128,500	3,128,500	
	기획조정실	내부유보금	0	3,128,500	3,128,500	

【과목변경】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	과 목 명		비 고
				당 초	변 경	
계			15,000			
229	문화관광체육국	제10회 라우다페 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	1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二 동 의 안

-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5월 6일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1. 제안이유

-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 중점 사업으로
- 대용량 ESS 설치 및 친환경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연료전지) 설치 등 총구축비 3,902억원으로 도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사업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성하고자 민·관 합동 개발방식(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 119억원 상당 규모의 현금을 출자하여 경상북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에 자본금을 현금 출자하고자 함.

- 출자총액 : 11,900백만원

나. SPC 설립자본금 및 도 출자 규모

- 설립자본금 : 990억원

- 출자비율 : 도 12%, 울릉군 3%, 한전 25%, 민간 60%

- 출자금액 : 도 119억원, 울릉군 29.5억원, 한전 248억원, 민간 593.5억원

SPC 설립 (설립비용)	출자비율 및 출자금액				비고
	지자체(15%)		한전(25%)	민간(60%)	
	경북도(12%)	울릉군(3%)			
990억원	119억원	29.5억원	248억원	593.5억원	

다. 도 연도별 출자금액

총 출자액 (경북도)	연도별 출자금액			비 고
	2015년	2016년	2017년	
119억원	53억원	50억원	16억원	

二 결 의 안

-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 결의안
-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 결의안

독도는 천오백여년의 유구한 세월동안 한민족과 애환을 함께 해온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명명백백한 우리 땅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인륜적 침략의 역사를 숨기고 미화하는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하고 『2015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또다시 과거사를 왜곡·날조하며 영토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다.

특히 대부분의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거짓 내용을 기술했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행위로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지난달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하자”고 합의한 지 보름만의 배신이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까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이웃 국가에 대한 증오와 반목의 씨앗을 심어 키우려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진정 표리부동(表裏不同), 구밀복검(口蜜腹劍)의 전형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민국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의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과거를 통절하게 반성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일본은 왜곡된 역사교육을 중단하고 『방위백서』, 『외교청서』 및 각종 교과서 등에 기술한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일본은 과거 잔혹했던 침략의 역사와 현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침을 직시하고 진정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하라!

2015년 4월 23일

대한민국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박성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
----------	-----

발의연월일 : 2015. 4. 10.

발의자 : 박성만, 배영애, 김정숙, 박용선,

남천희, 이상구, 이태식, 오세혁,

박문하, 도기욱, 김희수, 홍진규 의원(12명)

1. 주 문

- “불입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수도권은 공동화되어 많은 비효율을 낳고 있는 반면, 지방은 지역경제 침체와 공동화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 정부 들어 또 다시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와 함께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촉발된 도내 소재 지방대학교의 수도권 이전 움직임은 수도권 분산정책과 지역의 균형발전 취지에 정면 위배되며 이에 따라 지역인구 유출과 경기침체 등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것은 자명함.

- 이에,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개선, 지방대학의 실질적 육성 등 현실적 대안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절대 불가함을 촉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도권에의 과도한 집중화로 인한 폐해 발생, 지방은 지역 경제 침체와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산업단지 신증설과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으로 촉발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움직임은 지역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 지방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함.

하나.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경쟁력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와 기업을 집중시키는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과 공항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배제 등의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가속시키는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개발은 물론 가시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을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헌법상 의무인 지역간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라.

4. 결의안 제출처 : 대통령 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의 과도한 집중화는 너무나 많은 폐해를 낳고 있으며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국가자원과 핵심시설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은 마치 거대한 공룡처럼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져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비효율성과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교통·주거·환경 등의 악화로 삶의 질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가구조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균형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가안보차원에서도 중대한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은 아직도 수도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에 젖어 있으며 더욱이 현 정부는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산업단지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는 행위와 다르지 아니하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라는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공동화를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확대는 물론 지방과 수도권의 공멸을 초래하고야 말 것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그동안 대학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촉발된 도내 소재 지방대학교의 수도권 이천 움직임은 수도권 분산정책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이 기회에 줄어드는 학생수와 학교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결국 지역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오야 할 것이기에 지역주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지방대학의 실질적 육성 등의 현실적 대안없는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역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경쟁력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와 기업을 집중시키는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허용,

항만과 공항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
증설을 위한 입지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배제 등의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가속시키는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개발은 물론 가시적이고 실효
성있는 지원을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헌법상 의무인 지역간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라

2015년 5월 6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75·276·277회 임시회)



2015. 5. 인쇄 / 2015. 5.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 화 : 602-5146

FAX : 602-5140



<비매품>